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일시 2018. 07. 10.(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국회의원 김순례(자유한국당)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Korea Council of Group Home for Children & Youth



온프렌즈
(사)한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 Child Welfare
Center Association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한국사회복지사업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진행순서

사회 | 배봉수 보좌관 (김순례 의원실)

시 간	일 정	행 사 내 용
13:30 ~ 14:00 (30분)	접 수	참석자 접수 및 안내
14:00 ~ 14:30 (30분)	개 회	국민의례 주요 내빈소개 인사말씀 축사 아동연대 대표단 단체 인사
14:30 ~ 15:00 (30분)	발 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이봉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00 ~ 15:10 (10분)	휴 식	
15:10 ~ 16:50 (100분)	토 론	좌장 : 정무성 / 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 강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중 /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성태숙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대표 표주현 / 한몸그룹홈 시설장 보건복지부 종합토론 및 방청객 질의응답
16:50 ~ 17:00 (10분)		폐 회

목차

환영사 / 축사

김 순 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
남 세 도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8
안 정 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11
옥 경 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14
오 승 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7
박 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	19
조 배 숙	민주평화당 대표	23

발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현황과 처우개선 방안〉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 봉 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5

토론

좌 장 : 정 무 성 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

강 지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43
이 은 중	노무법인 화평 공인중개사	49
성 태 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대표	55
표 주 현	한몸그룹홈 시설장	71

부록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활동상황	83
----	-----------------------------	----

환영사



국회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순례입니다.

오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남세도 상임대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좌장으로 수고하실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님, 주제발표를 맡으신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님, 노무법인 화평 이은중 노무사님,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대표님, 한몸그룹홈 표주현 시설장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담당자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의 열악한 처우는 어제 오늘 지적되어 온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그룹홈 예산은 복지예산이 아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부족한 국고보조금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차별적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종사자분들이 10년을 일 해도 1년을 일한 종사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에 대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종사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고,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모여져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이사장 남세도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우리는 요구 합니다 -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 뜨거운 열정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전국의 아동복지 시설 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 연대 상임대표와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세도입니다.

올해 4월 9일(화) 광화문 앞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개 단체가 모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 연대’를 공식출범하였습니다.

‘17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아동복지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의 움직임은 보이지만, 이렇다 할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은 아직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대는 아동복지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견디다 못해, 우리 아이들이 있는 시설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사회 복지사분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들에 힘을 얻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설로 출근한다는 사회 초년생 생활복지사의 이야기 등 이 모두가 열악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우리에 모습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전문가인 우리들이 십수년이 넘도록 인건비에 대한 보장된 근거도 없이, 운영지침 상에 단순하게 명시된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걸 정부와 국회에 계신 분들은 가슴깊이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이봉주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처우와 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늦춰서는 안되는 현안에 대해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 분들의 해안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님 및 안정선, 오승환, 옥경원 공동대표님, 주제발표에 이봉주 교수님, 좌장에 정무성 총장님, 토론에 강지원 부연구위원님, 이은중 노무사님, 성태숙 대표님, 표주현 시설장님, 보건복지부 임대식, 유주현 과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현장의 사회복지사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하게 참석은 못하였지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아동그룹홈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 하나의 소중함을 느끼며, 오늘 토론회가 희망을 얻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회장 안정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무례해 보이겠지만 이런 인사말을 다시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법제화 15년, 벌써 수도 없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세미나, 토론회를 하였고, 수차례 같은 내용의 인사 글을 쓰다 보니 이제 허무하기조차 합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왜 불평등한 일은 지속되는 것인지.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그 대상이 어른인 경우의 다른 분야는 더 많이, 더 빨리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우리 아동분야는 더 오랫동안 더 적게 처우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분노마저 스칩니다.

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스러진 기대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자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조차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아동분야는 비정상적으로, 차별적으로 처우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지요.

여러 측면의 요인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아동들이 힘이 없고, 더구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그나마 부모라는 배경조차 마땅찮으니 늘 뒷전으로 쳐져, 다른 요구들이 다 해결된 후에야 남는 걸 겨우 조금 얻어주는 식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동이 나라의 희망이요 미래라고 하는 공허한 구호는 씨먹을 필요가 있을 때에나 잠깐 나왔다가는, 일상에서는 다시 어느 구석엔가 처박혀 구박덩어리 찬밥신세처럼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더구나 그 희망이자 미래인 아동들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이 어째서 구걸하는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냥 가정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공부방을 만들어 고생하며 아동들을 돌볼 때 아무런 대책도 지원도 없던 정부가, 법제화로 제도 속에 끌어놓고서는 이제는 도리어 귀찮은 존재처럼 구박하며 멸시합니다. 다양한 구실 중에는 아이들에게 줄 돈을 왜 어른들에게 주어야 하나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 안칩니다. 아동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아동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안겨줘야 아동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은 좋은 어른이 아동의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가장 싸고 좋은 환경을 도외시하고 엉뚱하고 고집스럽게 어른들을 타박하기만 합니다. 결국 좋은 어른들이 아동들 곁을 지킬 수 없어 다 떠나고, 아동보호체계가 다 무너진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이미 더 이상은 이런 자발적인 체계는 없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무너지고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들에게 다시 출산을 강요해도 더 이상은 정상화하기 어렵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남들보다 더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고 남들만큼, 남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일하는 보람이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하라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구실과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아동보호의 최후 보루인 자발적인 좋은 어른들이 절망하고 떠나기 전에 가시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정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희망을 구한다면 더 이상의 농락과 핑계를 건어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고도 정의로운 결과를 내놓아야 하고 모두 이것에 합의하여 실행으로 나가야합니다. 정부의 각성을 통해 바른 대책이 세워지고, 다시는 이런 절박한 호소의 자리는 없어야 합니다.

너무 격했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 동안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애써 도와주시다가, 내외의 환경변화로 바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발표를 맡아 주신 이봉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약한 단체들을 위해 자리를 내려와 좌장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정무성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노고를 마다 않으신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곤궁한 처지에 놓인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곤란을 무릅쓰고 앞장서 고생해주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오승환 회장님께 말뿐이 아닌 지면을 빌어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폭서에도 경향 각지에서 기대와 우려를 품고, 처우개선의 열의를 가지고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디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사



대표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Thank you !

지난 6월 23일,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탐 루앙동굴(10km)에서는 불어난 물에 유소년 축구선수 팀 코치와 아이들 13명이 고립되어 실종된 지 10일 만에 7km 지점에서 발견되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태국과 각 국의 구조대가 1,000여 명 넘게 투입되었고 심지어 영국의 30년 동굴 연구 전문가까지 참여하여 최초 발견하였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한 아이의 첫 마디는“먹을 것을 달라.”그리고 “Thank you!”였습니다.

반면, 6월 20일, 중국의 8층 건물에서 여고생이 투신자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던 10여 명의 사람들은 여고생을 비롯하며 “빨리 뛰어내려라”고 부추기자 손을 잡고 있던 소방관의 손을 뿌리치고 “고마워요, 가야겠어요.”라는 말을 남긴 채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구경꾼 현상인 ‘웨이관 문화’입니다.

몇 일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은 사람, 특히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넬슨만델라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보다 더 날카롭게 그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만나는 아동복지 종사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사회사업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가 최우선 순위에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18년 4월 5일,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전국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in Jeju’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크게 나누면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중략) 먼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2022년까지, 빠르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까지 100% 이상 도달하도록 하고자 한다.(중략) 국가 지원을 받는 시설은 2020년까지, 지방이양 시설의 경우 2022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올라가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좀 더 멋있고 괜찮은 직장**과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주력해 가겠다.”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물론, 그 언조는 단호하였습니다. 또“장관 혼자서 할 수 없고 국회의 힘과 현장의 동의가 있어야 잘 해나갈 수 있다.”하였으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아동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아동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마련, 인건비 가이드라인 생성**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토론회는 시기적절하게 개최되는 ‘토크콘서트 in Jeju’의 실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무관심한 웨이관 문화와 같이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던 습관을 벗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에 이 토론회가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님, 야당의원으로서 끝까지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선 이후 부터 줄곧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에 앞장서서 짐을 져 주시는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님,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땀 흘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이사장님,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실천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맞잡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님, 마지막으로 귀한 자리 좌장으로 수고해주시며 아동복지의 뜻을 값지게 빛내주시고 계신 정무성 은사 교수님과 각 토론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사



회장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끄러운 ‘열정페이’, 끝장내는 계기토론

남북 정상도 만나고, 북미 정상도 만났습니다. 한여름의 국제 정세가 봄날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갈라진 민족이 함께 살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습니다. 철도로 시베리아도 가고 유럽과 중동도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회복지사들의 활발한 움직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복지분야 중추인 사회복지사가 국회에 모였습니다. 환영할 토론회인데 우리의 앞날은 봄날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십 수 년 간 요구와 조정이 헛돌기만 하니 꿈에서 깨어야 하나, ‘이제 화도 안 난다’는 한숨이 가득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급여는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3분의 2 수준(그룹홈은 62%, 지역아동센터는 69%)에 불과합니다. 언론도 ‘열정페이’로 거론하는 등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담았는데,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버려진 자식처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겁니다.

전국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실현 가능성과 중요도에 대해 정부와 우리가 동상이몽 상 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현재 가이드라인이 있는 분야에 국한한 ‘가이드라인 단일화’로 제한적 사고와 적용을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나누듯, 현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분야와 아동복지분야가 하나의 임금체계를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단일임금체계’로 가는 길목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분야를 보다 확대 포괄하는 형태의 ‘가이드라인 생성 및 명문화’가 절실합니다. 호봉제 및 승진체계 도입 역시 거쳐야 할 매우 현실적 과제입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구체 절차를 고려하기 위해 현장가와 정책당국이 무릎을 맞대는 ‘민관 상설 회의체(TF) 운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겐 장기과제이고 매우 큰 목표일 수 있으나, 또 누군가에겐 너무 작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매년 인건비를 갖고 퍼센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 산업별 임금테이블을 동일하게 만드는 데에 힘을 실었으면 합니다. 토론회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담당부서가 아닌 일자리 및 임금체계 소관 부서가, 기획재정부는 복지예산 소관 부서가 마음을 같이 하길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 올해 안에 문제를 끝장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축사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존경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

아동은 미래의 희망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질 주역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아동복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순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아동들이 보다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나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연령 확대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내실화 등
필요한 지원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각 시·군·구 단위의 아동담당 공무원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OCE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동이나 가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의
정책 개발과 지원도 지속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동복지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설장과 종사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현장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의 숙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순례 의원님을 비롯하여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동복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축사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입니다.

먼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식으로 아동복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모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의 정당한 처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토론회의 개최를 환영합니다.

아동복지란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정부지만 결국 지역의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의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는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축인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탁상의 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동복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문제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현재의 임금체계는 전형적인 이중임금 구조입니다.

정책목표는 확대하면서도 정작 정책을 실행할 사회복지사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복지정책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이탈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종래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결국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사람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절박한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다시금 정부에 전달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의 이중임금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현황과 처우개선 방안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현황과 처우개선 방안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서론

-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과 서비스 질의 중요성이 강조
- ▶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사회복지시설 인력에 대한 적정 임금 체계 정착이 요구됨
- ▶ 하지만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함
⇒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격차 해소와 처우개선이 요구됨
- ▶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필요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

사회복지 노동자는 사회복지 공적 서비스 제공을 담당

대다수 사회복지 노동자는 민간 시설에서 근로

실질적인 근로 형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관계로 수행

사회복지 노동자: 특수한 노동자 지위

임금 구성과 재원 확보와 관련한 지위 보장을 위해 개별기관보다는 국가나 지자체 요구 할 수밖에 없음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지방이양 시설)을 제시하고 있음

실제는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각 개별 부서에서 제시하는 지침, 지방이양 사업은 각 지자체 지침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지방 이양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수준은 2016년 기준 99.4%) → 오히려 국고보조사업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지방 이양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 3조의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제 3조의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제 3조의 3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2017년 12월 말 기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227개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163개(72%)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를 제정

아동그룹홈 종사자 1인당 평균 인건비 비교

가이드라인 대비 시설장(과장9호봉)은 50%

보육사(생활지도원4호봉)은 73% 수준에 불과

(기본급 + 가족 · 명절 · 시간 외 수당을 합산한 연봉대비 비율임)

구분		시설장	보육사	비고
평균 호봉		사회복지 9.9호봉 (과장 9호봉)	사회복지 4.6호봉 (생활지도원4호봉)	
월 평 균	평균 급여	1,700,000원 (과장 9호봉: 61.5%)	1,700,000원 (생활지도원 4호봉: 89.8%)	• 기본급 1개월분
	호봉인정 급여	과장9호봉: 2,765,000원	생활지도원4호봉: 1,893,900원	
연 평 균	평균 급여	20,400,000원 (과장 9호봉: 50.2%)	20,400,000원 (생활지도원 4호봉: 72.9%)	• 기본급 12개월분 (기본급 외 수당 없음)
	2018년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 적용 시 급여	과장 9호봉 40,601,640원	생활지도원 4호봉 27,977,760원	• 기본급+수당 12개월분 -가족수당: 배우자 1인 -명절수당: 봉급액120% -시간외수당 12개월분 (월 20시간 기준)

출처: 2018년 사회복지 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아동그룹홈 급여조사 기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인당 평균 인건비 비교

가이드라인 대비 시설장(과장12호봉)은 42%

교사(선임6호봉)은 57% 수준에 불과

(기본급 + 가족·명절·시간 외 수당을 합산한 연봉대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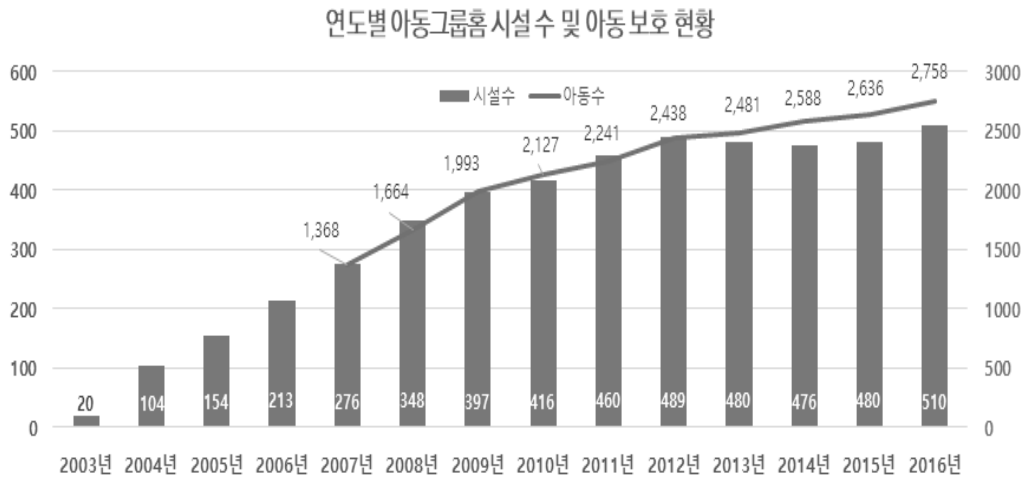
구분		시설장	보육사	비고
평균호봉		사회복지 11년 (과장 12호봉)	사회복지 5년 9개월 (선임 6호봉)	
월 평 균	평균 급여	1,579,175원 (과장 12호봉 51.7%)	1,571,937원 (선임 6호봉 70.0%)	• 기본급 1개월분
	호봉인정 급여	과장 12호봉: 3,056,400원	선임 6호봉: 2,245,900원	
연 평 균	평균 급여	18,950,100원 (과장 12호봉: 42.3%)	18,863,244원 (선임 6호봉: 57.0%)	• 기본급 12개월분 (기본급외 수당 없음)
	2018년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 적용 시 급여	과장 12호봉 44,824,560원	선임 6호봉 33,078,960원	• 기본급+수당 12개월분 -가족수당: 배우자 1인 -명절수당: 봉급액120% -시간외수당 12개월분 (월 15시간 기준)

출처: 2018년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지역아동센터 급여조사 기준

아동그룹홈 시설 및 아동현황

아동그룹홈은 2004년 법제화된 이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10개소에 만 0~18세 아동 2,758명이 보호되고 있음 (2018년 6월 현재 약 530개로 추정되며 약 3,000명)

=> 이중 입소 전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2017년 기준으로 68%로 10명 중 7명 정도가 학대, 방임으로 입소하게 되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ADHD나 경계선지능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문적 서비스 수요의 증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설수	20	104	154	213	276	348	397	416	460	489	480	476	480	510
아동수					1,368	1,664	1,993	2,127	2,241	2,438	2,481	2,588	2,636	2,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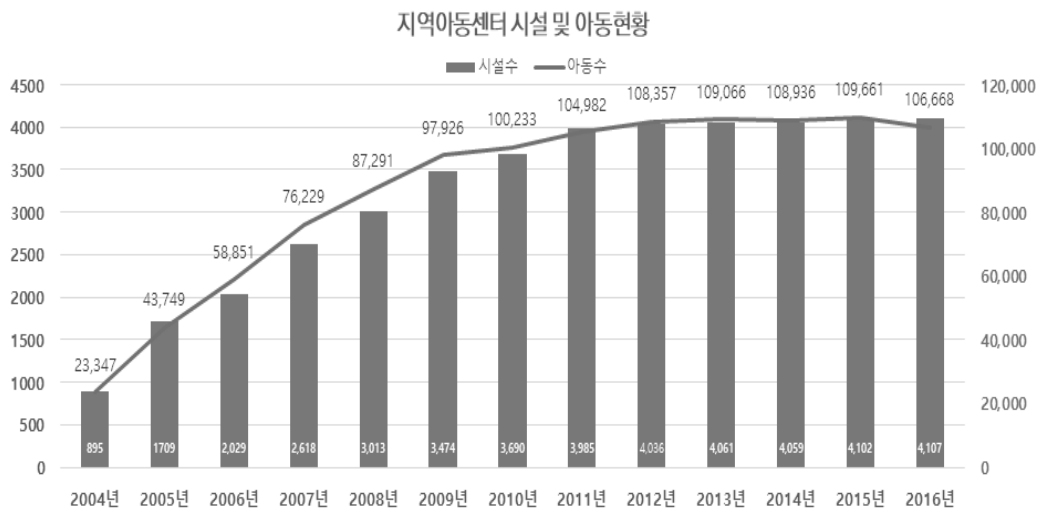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8 / 보건복지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평가, 2016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아동현황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된 이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107개소에 0~18세 아동 106,668명이 이용하고 있음

=> 이중 특별 관리 아동(다문화가정 아동수)이

2012년 6,902명에서 2016년 13,34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문적 서비스 수요의 증가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설수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아동수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106,668

출처: 보건복지부, 2016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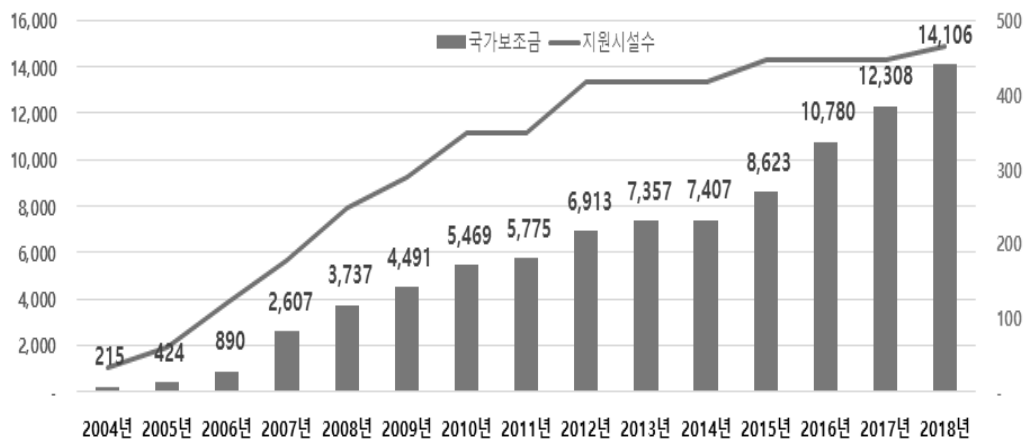
아동그룹홈 예산지원 현황

아동그룹홈의 경우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이 아닌 복권기금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며, 6:4로 매칭되는 비 분권 중앙정부(국고지원) 사업임

2016년부터 기재부 방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예산까지 요보호 아동그룹홈 사업으로 분류됨 (법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근거로)

=> 2018년 현재 141억. 호봉직급 구분 없이 1인 연 24,942,000원 (퇴직금,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포함)에 실질 급여는 월 175만 원임 운영비는 아동 5~7명 전체 월 31만 원임

연도별 아동그룹홈 예산지원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 시설수	32	60	120	176	248	290	348	348	416	416	416	448	448	448	466
국가 보조금	215	424	890	2,607	3,737	4,491	5,469	5,775	6,913	7,357	7,407	8,623	10,780	12,308	14,106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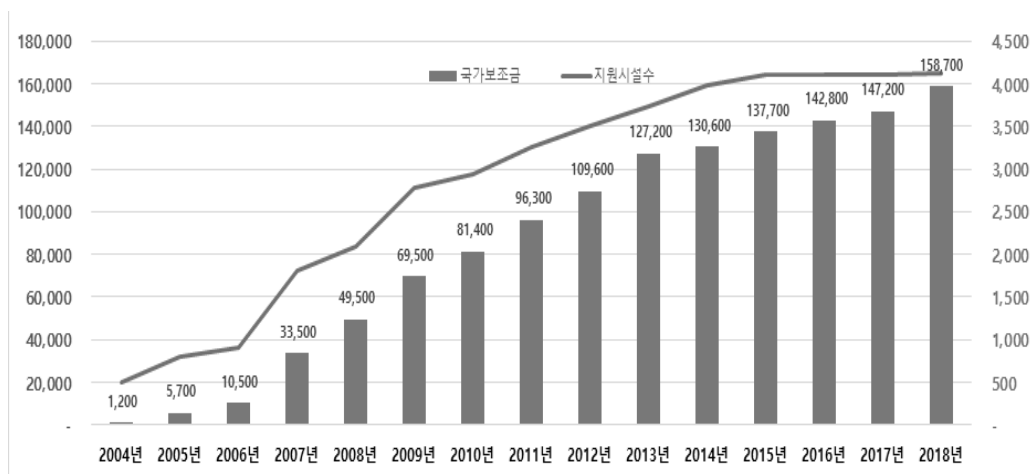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8 / 정익중,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연구, 2018년 6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발표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며, 6:4로 매칭되는 비 분권 중앙정부 (국고지원) 사업임

=> 2016년 12월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장 161만 원, 생활복지사 14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480만 원(18년 기준, 29인 시설)에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지급됨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 시설수	500	800	920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4,113	4,113	4,113	4,124
국가 보조금	1,200	5,700	10,500	33,500	49,500	69,500	81,400	96,300	109,600	127,200	130,600	137,700	142,800	147,200	158,700

(단위 : 백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확정예산 안내, 2004-2018

아동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타 시설 간 임금 비교

2016년 비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62%, 생활복지사 82%, 아동그룹홈 시설장 63%

(단위 : 천원, %)

종사자 직업군	직급	가이드라인 임금기준 (각 사업별 지침에 명시된 기준)	급여지급	적정인건비 대비 급여수준 ¹⁾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지급기준없음 ²⁾	1,616	62.1
	생활복지사	1,350	1,446	82.2
	생활지도원	-	-	-
아동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1,827	1,827	63.7
	생활복지사	-	-	-
	생활지도원	1,827	1,827	81.9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3,129	3,129	94.8
	생활복지사	2,562	2,562	94.7
	생활지도원	2,125	2,125	92.7
정신요양시설	시설장	3,089	3,089	93.5
	생활복지사	2,529	2,529	93.5
	생활지도원	2,300	2,300	92.6
지역자활센터 (1급)	시설장	3,011	3,011	91.2
	생활복지사	2,357	2,357	87.2
	생활지도원	2,178	2,178	95.0
양로시설	시설장	3,089	3,089	93.5
	생활복지사	2,529	2,529	93.5
	생활지도원	2,300	2,300	92.6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권미혁 의원실 재구성 (2017년 10월 30일 언론 보도자료)

- ▶ 적정인건비 기준은 직업군별 평가보고서의 평균 호봉 (근무 기간)으로 계산
- ▶ 아동복지법에 의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 직종 상 생활복지사, 아동그룹홈은 보육사로 구분됨

1) 적정인건비 :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대비

2)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사업별 지침에 명시된 임금 기준 : 2016년 1월: 150만 원 → 2016년 2월: 135만 원으로 조정(사유: 2016년 운영보조금으로 150만 원 지급 불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인건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자활센터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90.4%	95.7%	100%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년)	39,293	42,829	46,684	48,085	49,528
노숙인 ³⁾ 거주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83.2%	90.5%	100%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년)	43,953	49,227	55,135	56,789	58,492
장애인 거주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94.0%	97%	100%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년)	43,765	46,215	48,988	50,458	51,972
*양로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92.2%	97.6%	100%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년)	26,700	29,160	30,936	31,860	32,820
*정신요양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92.2%	95.4%	100%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년)	50,196	53,508	58,164	59,904	61,704
*지역아동센터 ⁴⁾ (기본운영비지원)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시설장) (생활복지사)	65%	80%	81%	90%	100%
		83%	94%	100%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년)	61,920	69,960	75,000	79,440	84,720
아동그룹홈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80.8%	85.2%	89.9%	94.8%	100%
	인건비 단가(천원/년)	24,942	27,087	29,416	31,946	34,694

출처: 권미혁 의원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관련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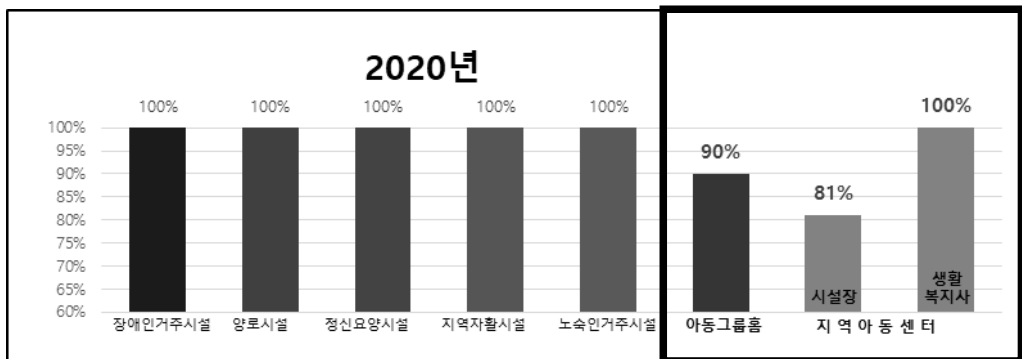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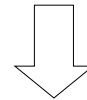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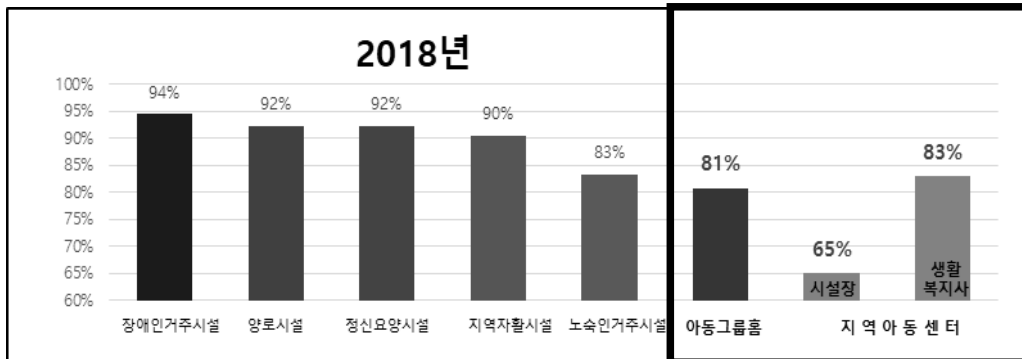
* 인원은 증가시키지 않고 18년 인원으로 계산

▶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 19년 이후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3% 인상 가정

3) 가이드라인 해당 직위(4개/원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 지도원)만 평균한 금액인 2,976천원 대비한 비율임

4) 시설장, 선임사회복지사 8호봉 (16년 기준 평균경력 7년 5개월) 기준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4호봉 (16년 기준 평균경력 3년 5개월)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달성 비율



2018년 기준,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달성비율은

국고지원 시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3년 차인 2020년에도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는 100%에 미치지 못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

아동그룹홈의 시설장과 보육사들의 실태조사 결과

근무만족도는 높으나, 급여만족도는 낮음

-> 아동들에게 잦은 양육자의 교체는 아동보호의 질을 저하시킴

아동그룹홈 시설장

	항목	빈도	백분율	순위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	운영자금 마련	81	24.3	3
	전문 인력	50	15	7
	아동보호/지도개발	41	12.3	9
	종사자 처우 개선	300	89.8	1
	시설 증개축/이전	53	15.9	6
	시설 개보수	45	13.5	8
	후원관리/발굴	78	23.4	4
	정부의 행정지원	32	9.6	10
	정부의 재정지원	158	47.3	2
	아동 입소/배치자율권	56	16.8	5
	기타	10	3	11

아동그룹홈 보육사

	항목	빈도	백분율	순위
현재 가장 시급한 상황	근무시간 개선	36	8.3	3
	보수 체계의 개선	307	70.7	1
	전문성 강화	23	5.3	4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	8	1.8	5
	슈퍼비전 제공	4	0.9	7
	재충전의 기회	49	11.3	2
	기타	7	1.6	6

출처 : 정익중,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연구, 2018년 6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발표

아동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

〈외적 요인〉

1. 전체 근로시간 단축 (2021.7.1. 유예)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폐지 (2018.9.1부터) 등
노동환경변화
2.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정책 변화



〈내적 요인〉

1.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높은 소진과 이직률
2. 종사자 전문성과 운영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내부적 욕구

〈기대효과〉

1. 차별, 부조화, 비정상화된 아동복지 문제해결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실현 가능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가치 구현
3.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으로 아동복지와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4. 아동복지시설의 공공성 제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 방향

사 도 자체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사례

제주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종사자들도 가이드라인 적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5년 1월, 그룹홈은 2017년 7월부터 적용받고 있음
시설장의 경우 사무국장급, 그룹홈 보육사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는 4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월 12시간 책정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시설장 제외)

서울시 중앙정부 사업(비분권) 종사자에게도 가이드라인 적용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중

국비 보조전환시설에 대한 보전 실시

- 지원 대상 : 2005년 지방 이양된 시설 중 2015년 국비 보조로 전환(5:5 매칭)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3종 시설 55개소의 경우 서울시 지원기준과 차액 일부 보전
총 55개 시설 2,132명에 대한 예산 3,300백만 원 확보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도 부분적으로 처우개선 가능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실현 가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에 공무원 기본급 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은

- (1) 사회복지 사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업무라는 점
- (2) 교육서비스, 소방서비스, 우편 서비스 등과 같은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임금체계와의 형평성 보장
- (3) 이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개선방향

1. 비분권 (중앙)복지 사업 중 사회복지사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받고 있지 못한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임금체계인 자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없기에 직급과 연차에 따른 기준이 필요함.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준하는 단일화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입 :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도 이에 당연히 포함

공무원 임금체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적용할 때, 노인영역 2천 6백억, 아동영역 4천 7백억, 장애인영역 6천5백억, 정신보건 6백5십억, 지역사회영역 2천억 원 등 총 1조 6천 5백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3. 5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함

특히 최저임금상승, 근로기준법 특례폐지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한 인력충원과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규모 노동 관련 소송과 민원 발생 우려

4.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설 간 격차가 발생하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함

5. 아동그룹홈의 경우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에서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대부분의 아동 관련 예산이 복권기금이나 학대 예방과 권리 증진 사업이 범피기금으로 편제되어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와 예산을 수립하는 부처가 상이함. 이에 따라 기금사업평가 결과나 기금 수입금의 변동에 따라 예산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더불어 종사자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비 지원, 소진 예방을 위한 대체인력파견 확대, 양육과 보호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 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

보건복지부, 2018년 사회복지생활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8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권미혁의원실 재구성(2017년 10월 30일 언론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20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확정예산 안내, 2004~2018

보건복지부·송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2016

이봉주·김용득·김진우·노법래, 2017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임금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정익중,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연구, 2018년 6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발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분야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2016



토론 I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현황과 처우개선 방안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부연구위원

토론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현황과 처우개선 방안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부연구위원

현장에서 아동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동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이봉주 교수님의 발표에 토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그룹홈, 자립 지원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이 중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년 아동 분야 사업안내, p.111). 전 세계적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가 탈시설화를 지향하는 현 상황에서 아동학대,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원 가족과 분리돼 생활하는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그룹홈의 필요성과 지원의 타당성이 제기된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2017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p.3). 지역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동 돌봄 제공기관에 대한 시설의 필요성과 지원의 타당성이 제기된다.

요약하면,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의 설치 목적 및 제공 서비스에 차이가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을 정책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돌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잔여적인 형태로 제공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먼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대인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을 위한 지침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전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근거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 제시되어야 할 근거의 타당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고자 한다.

먼저 발표문에서 제시한 근거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발표문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2018년 기준 아동 분야 사업 안내>와 <2017년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2016년 기준 시설수와 아동수를 제시하였지만, 종사자 1인당 평균 인건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발표문에서는 ‘아동그룹홈 급여조사’ 혹은 ‘지역아동센터 급여조사’를 참고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표본 수와 응답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들 사업이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료 공식 통계와 다른 데이터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그룹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인건비 24,942천원/인(연), 운영비 314천원/개소(월)로 명시되어 있다. 유사하게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에서는 2016년 12월 말 기준 시설장 월평균 161.5만 원, 생활복지사 월평균 144.6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종사자의 평균 경력에 대한 근거도 제시되었다.⁵⁾

5) 시설장의 근무기간은 현재 센터 6년 5개월, 지역아동센터 7년 5개월, 사회복지시설 9년의 경력으로 나타났다. 생활복지사의 경우 현재 센터 3년 1개월, 지역아동센터 3년 5개월, 사회복지시설 3년 9개월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현재 발표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시설장은 사회복지 11년, 생활복지사는 5년 9개월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고려하면, 각각 과장 16호봉(2016년 기준 15.9호봉+2017년분 1호봉)과 선임 사회복지사 5호봉(4.4호봉+1호봉)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논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사회복지시설의 과장급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아동복지시설의 생활복지사 혹은 보육사가 사회복지시설의 선임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에 있다. 본 발표문과 참고문헌에 제시된 참고자료 모두 각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를 계산하면서 직무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모두 종사자 2인 시설이지만, 종사자의 고용상태 및 종사상 지위, 활용 가능한 인력, 인적·물적 자원 연계 등⁶⁾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칫 다른 사업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의 타 시설 간 임금을 비교할 때 인력의 배치 기준과 입직 요건의 차이, 직무의 속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각 시설은 이용 대상의 욕구와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상별 차이는 직무 수준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자격요건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동질적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과 입직 요건을 구분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여기 모인 종사자 스스로가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다. 유사하게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직무를 나열해보고, 그것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노인주거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등의 종사자의 직무와 동일한 지에 대한 성숙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토론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 직무 기준 인건비 기준에 대한 논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시설 운영 주체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기준의 단순 적용이 한계가 있다면, 직무급제 인건비

6)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복지교사, 공익근무요원, 기타 일자리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인력이 합산하면 15,378명이고, 민간지원인력,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강사 등을 합산하면 109,336명이다. 물론 이러한 기타인력의 분포가 지역 간 규모 간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기준 마련 역시 가능한 대안이다.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마련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운영 주체의 차이와 종사자 지위 등의 차이를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직무급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본 발표문에서는 시설 및 아동 현황 등을 소개하면서 전문적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실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만 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 관리와 종사자 처우개선,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한 추가 인력 확보 및 전문적인 서비스 연계 등이 균형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었고, 타 조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이라고 해도 시설의 운영 내실화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리 전개가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표문에서 제시한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사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상 사회복지서비스업 특례 폐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외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소진, 전문성과 운영의 질 향상에 대한 내적 요인의 압력에 따라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

다만, 앞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은 시설장과 종사자가 동일성, 가족 종사자의 운영, 시설별 후원금의 운영 등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구성원이 동의해야 할 몇 가지 전제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일자리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근무 하는 아동복지교사와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다. 물론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으로 소요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업이지만, 이제 우리 국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 시혜적 복지서비스에서 양질의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있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서비스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토론 II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노무법인 화평 이은중 공인노무사

최근의 노동법 개정 현황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 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법을 개정함

구분	내용
연차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제 60조)	1년 미만 근로기간 중의 연차휴가 11일 확대 (2018.05.29.시행)
주 52시간 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18.07.01.시행 ▶ 50~299인 : 2020.01.01.시행 ▶ 5~49인 : 2021.07.01. 시행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법정 휴일 확대 (근로기준법 제 55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도입 ▶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20.01.01.시행 ▶ 50~299인 : 2021.01.01.시행 ▶ 5~49인 : 2022.07.01. 시행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사회복지사업 삭제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및 휴일 확대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그 적용이 배제됨.

2018년도 아동그룹홈의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가. 임금

2018년도 아동그룹홈의 보조금은 1인당 연간 24,942,000원임. 여기에는 기관이 부담해야할 사회 보험료와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보조금을 아동그룹홈 종사자 월 급여로 환산하면 약 1,763,790원임

월 급여액 (비과세제외)	4대보험		퇴직급여 (DC형/월)	합계(월)	연간보조금
	항목	금액			
1,763,790	국민연금	79,370	146,980	2,078,500	24,942,000
	건강보험	55,030			
	요양보험	4,060			
	고용보험	15,870			
	산재보험	13,400			

나. 근로시간

2명의 보육사가 월~토까지 주 3회 출근하여 08:30 ~ 익일 08:30 (휴게시간 12:00 ~ 13:00, 18:00 ~ 19:00, 22:00 ~ 익일 6:00) 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08:30 ~ 익일 08:30 (휴게시간 동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음

- ▶ 근로시간
 - 주중 1일 근로시간 = 14h (24h-10h)
 - 연간 52일 (365일/7일)의 일요일 중 1명의 보육사는 월 2.16일(52일/12월/2명) 근무함
 - 유급 주휴시간 = 8h
-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 (주중 14h x 3일 x 4.34주) + (일요일 14h x 2.16일) + 주휴 (8h x 4.34주) = 182.28h + 30.24h + 34.72h = **247.24시간**

다. 통상시급

상기 급여액 1,763,790원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인 247.24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통상시급은 7,133.9원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을 하회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

상기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가정한 것이므로 각 아동그룹홈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함

라. 결론

▶ “돌봄 서비스”라는 유사 또는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및 휴일 확대 등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금액에 미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또한 연간 보조금이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그 의미를 확대, 적용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됨.(끝)



토론 III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성태숙 대표

국가는 지역아동센터를 차별합니다

“선생님 우리 돌봄 교실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인데요, 갑자기 가정 사정이 어려워져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연락드렸어요. 아버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데 센터에 지금 입소가 가능할까요?”

-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안전한 보호 중심의 학교 돌봄 교실과는 달리, 아동과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자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아동복지 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함
-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종사자 처우 상황은 발제문의 ‘격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명백한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됨

-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중 평등권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89.1.25.88헌가7).

- 이에 따라 자의적인 차별은 평등권침해로서 위헌이 되며 평등원칙의 심사척도는 자의금지 원칙과 비례원칙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 이중 자의금지원칙의 심사요건은

-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 ②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할 때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함 (2002. 11.28.2002헌바45).

- 이와 더불어 비례원칙은 차별을 하고 있는 비교대상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

(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함
(2001. 2.22.2000헌마25)

- 헌법 제32조 제4항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만을 겨우 웃도는 수준임
-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적 권리침해의 우려도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급여는 복지부의 지침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있음. 이는 국가에 협력하여 국가사무인 아동복지 실현에 헌신하는 ‘국민’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침. 동일직종 유사직급의 여타 종사자들에 비해 상당한 급여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함께 심각한 차별로 인한 사회적 지위 격하, 심리적 소외감과 자존감 저하, 자기 회의 등의 심리·정서적, 사회적 피해 역시 적지 않음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사협에서 조사해본 결과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과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은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 전체를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사협 오승환 회장의 발언

“그리고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가 정말 가장 열악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죠?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복지시설협의회 회장단 모임 중 참석자 발언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구분	시설유형	임금체계	직급 체계 동일 여부
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무(無)	x
	아동양육시설	호봉제	동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양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이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호봉제	동일
	지역아동센터	무(無)	x
	지역자활센터	호봉제	동일
	사회복지관		

구분	시설유형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비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가이드라인	자체 가이드라인			
생활 시설	아동공동 생활가정	가이드라인 없음				인건비: 21,919천원/1인, 1년 (2인기준 월정액 365만원)
	아동 양육시설	1,918	서울 1,761	인천 1,841	경기 1,704	일자리과 가이드라인 88%~96%수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918	인천 1,841			일자리과 가이드라인의 77%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1,918	1,726			일자리과 가이드라인의 90%수준
	양로시설	1,918	1,704			2014년 일자리과 가이드라인 사용(예산부족)
	노숙인 요양시설	1,918	1,560			일자리과 가이드라인의 70%수준
	정신요양 시설	1,918	1,704			2014년 일자리과 가이드라인 사용(예산부족)
이용 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1,639	1,639			일자리과 가이드라인 사용
	지역아동센터	가이드라인 없음				1호봉 기준 기본급 150만원 지급 (최저임금 1,260,270원)
	지역자활센터	1,639	1,629			일자리과 가이드라인과 거의 동일
	사회복지관	1,639	1,321			기말수당 400% 적용 시 일자리과 가이드라인 상회

주 :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

직책별 임금수준 분석결과: 1호봉 기준

(단위: %p)

구분	직책	임금수준	연장수당 미포함 시		연장수당 포함 시	
			시설유형	최고대비 임금격차	시설유형	최고대비 임금격차
1호봉	시설장 또는 과장	최고 시설	사회복지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최저 2위시설	지역자활센터	28.9	지역자활센터	26.8
		최저 시설	지역아동센터	41.2	지역아동센터	44.7
	사회복지사	최고 시설	아동양육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최저 2위시설	지역자활센터	25.8	지역자활센터	27.6
		최저 시설	지역아동센터	36.7	지역아동센터	42.6

그러나 차별의 근거가 될 만한 직무상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음

아동시설 분석범위

(단위: %p)

직무내용	아동공동 생활가정	아동 양육시설	지역 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체 아동시설			
	업무시간	업무시간	업무시간	업무시간	아동보호전문 기관 포함		아동보호전문 기관 제외	
					직무여부	업무시간	직무여부	업무시간
1) 재무회계관리	12.4	0.4	6.0	2.4	○	6.0	○	7.4
2) 인사관리	4.6	0.3	1.7	2.5	○	2.6	○	2.6
3) 직원 및 조직역량강화	5.6	6.8	2.8	8.4	○	5.8	○	4.7
4) 외부 자원개발 관리	4.1	48.2	6.3	0.3	○	9.9	○	13.8
5) 기관홍보	0.3	27.3	1.3	0.2	○	4.4	○	6.1
6) 기관 연간/중장기 사업기획	4.0	0.0	5.5	2.9	X	3.6	○	3.8
7) 개별 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3.1	9.1	17.5	68.5	○	26.8	○	10.1
8) 시설 및 재산관리	19.0	0.4	9.1	0.4	○	8.2	○	11.3
9) 문서 및 전산관리	15.1	0.5	8.9	14.4	○	11.1	○	9.7
10) 보호 및 생활서비스	7.9	0.0	19.0	0.0	X	7.7	X	10.7
11)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21.8	6.9	19.5	0.0	X	12.8	X	17.9
12) 보건 및 건강관리서비스	2.1	0.0	2.3	0.0	X	1.3	X	1.8

사회복지 직무 평가결과 - 5점 만점

구분	전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시설간 차이 유의도 (Sig).
		아동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양육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양로 시설	노숙인 요양 시설	정신 요양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사례수	(660)	(42)	(47)	(49)	(46)	(47)	(39)	(40)	(100)	(50)	(100)	(100)	-
Q1. 전문지식	3.37	3.14	3.57	3.14	2.89	3.57	3.69	3.58	3.07	3.94	3.74	3.02	0.000
Q2. 현장경력	2.50	2.07	2.60	2.80	2.28	2.85	2.97	2.65	2.30	2.10	2.55	2.53	0.000
Q3. 타인의 협조	3.61	3.29	3.47	3.39	3.15	3.81	3.54	3.60	3.69	3.72	3.63	3.93	0.024
Q4. 신체적 위협	1.81	1.48	1.34	1.86	1.93	1.72	2.33	2.30	1.32	2.46	1.79	1.93	0.000
Q5. 업무량	3.67	3.48	3.55	3.51	4.13	3.55	3.87	3.60	3.60	4.22	3.59	3.58	0.000
Q6. 스트레스	3.45	2.95	3.34	3.27	3.63	3.66	3.90	3.78	3.25	3.98	3.24	3.49	0.000
Q6-1. 이용자 스트레스	3.20	3.11	3.07	2.66	3.22	3.17	3.74	3.37	2.77	3.98	2.95	3.56	0.000
Q7. 육체적 강도	3.33	3.36	3.06	3.18	3.65	3.43	3.74	3.48	3.37	3.22	3.33	3.14	0.001
Q8. 문제발생 대처	3.06	2.98	3.23	2.92	2.80	3.04	3.13	3.23	2.79	3.48	3.14	3.08	0.000
Q9. 사회복지 목표달성	3.85	3.79	3.85	3.61	3.96	3.79	3.85	3.73	4.11	4.10	3.68	3.80	0.005
Q10. 권한 위임	3.00	3.10	3.21	3.12	3.09	3.43	3.38	3.03	3.14	2.88	2.45	2.88	0.000
Q11. 전반적 난이도	65.7	65.0	61.0	62.4	66.1	64.0	72.6	65.8	62.8	73.6	64.8	67.8	0.032

- 위의 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직무구성이나 업무 난이도가 다른 시설과 상당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직무평가결과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 목표달성(4.11)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으며, 상당한 양의 업무(3.60)를 소화하기 위해 타인의 협조(3.69)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강도의 육체적 노동(3.37)과 전문지식(3.07)을 필요함. 업무 처리 종사자 수가 적음에 따라 직급을 가리지 않고 담당자들이 일을 함에 따라 권한위임(3.14)이 활발히 일어나고 이런 근로 환경에 따라 적지 않은 업무 스트레스(3.25)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평균 4가지 이상,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평균 3가지 이상의 직무분야가 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보건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외한 전체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종사자들이 전문성이 없기 보다는 전문적일 수 없도록 적은 수의 인원이 다루는 업무의 내용이 방대함, 심지어 2018년부터는 이용아동들의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초수준에서나마 진행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전체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슈퍼 종사자들이 될 판임.

시설유형별 : 시설장 과장 사회복지사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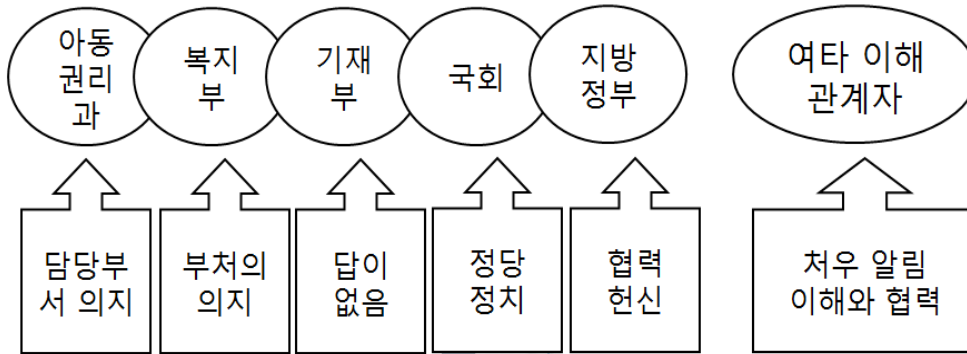
(단위: %p)

직무내용	생활시설										이용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 시설		아동시설 (지역아동 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직무 여부	업무 시간	직무 여부	업무 시간	직무 여부	업무 시간	직무 여부	업무 시간	직무 여부	업무 시간	직무 여부	업무 시간	직무 여부	업무 시간	직무 여부	업무 시간
1) 재무회계관리	○	8.4	○	10.1	X	4.4	○	23.7	X	0.0	○	6.0	X	0.7	○	18.0
2) 인사관리	○	3.1	○	4.5	X	23.1	X	1.4	X	3.5	○	1.7	○	1.7	○	1.7
3) 직원 및 조직역량강화	○	6.0	○	12.7	○	5.1	○	4.0	○	5.8	○	2.8	○	19.3	○	17.1
4) 외부 자원개발 관리	○	18.8	○	7.9	○	5.6	○	16.5	○	15.6	○	6.3	○	5.0	○	1.1
5) 기관홍보	○	9.3	○	8.2	○	3.6	○	2.5	○	4.7	○	1.3	○	0.5	○	1.3
6) 기관 연간/중장기 사업기획	X	2.7	○	8.9	○	11.2	○	3.5	○	7.4	○	5.5	○	5.8	○	12.0
7) 개별 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	5.1	○	28.9	○	23.5	○	22.7	○	24.6	○	17.5	○	12.1	○	33.5
8) 시설 및 재산관리	○	12.8	○	2.0	○	4.1	X	5.4	X	3.8	○	9.1	X	0.0	○	3.7
9) 문서 및 전산관리	○	10.2	X	3.0	○	4.5	○	4.6	X	0.2	○	8.9	○	4.8	○	8.7
10) 보호 및 생활서비스	X	5.3	X	11.5	X	2.5	X	7.8	○	22.5	○	19.0	○	28.1	X	2.9
11)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X	16.8	X	0.8	○	5.9	X	1.5	X	2.4	○	19.5	○	22.1	X	0.0
12) 보건 및 건강관리서비스	X	1.4	X	1.4	X	6.4	X	6.4	X	9.6	X	2.3	X	0.0	X	0.0

주1: (아동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업무에 치중되어 있어, 아동시설 직무분석에서 제외

2: (지역자활센터) 팀장, 팀원 직책 해당

-
- 대규모 시설들은 업무를 분화하고 기능화하여 사무행정 등은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게 하는 방식임에 반해 소규모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행정회계 등 기초업무를 포괄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임. 대규모 시설이 예산자원을 통해 각종 연구사업과 전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과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소규모 시설의 2~3명의 종사자들은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소화하기 위해 정신없이 서비스 제공에 매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임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력과 체계는 아동복지교사와 지원단 등이 존재하나 복지부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원하는 지원단이나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을 보완하는 아동복지교사제도 등은 지역아동센터를 근간으로 하여 발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설치근거 등이 미력함에도 애초에 종사자 급여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거나(지원단),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시행되는 점(아동복지교사)등에 비한다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겪지 않을 수 없음
 - 더욱 심각한 상황은 국가 행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중앙사업임에도 이러한 처우 결정이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행정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이 명시한 내용을 하위법률체계인 지침이 위반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다른 시설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게는 국회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같이 노력하자고 하지만 국회 전에 행정부 안에서 우선적으로 통일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복지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행정 정리가 필요해보임



-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등의 예산이 중앙예산인 탓에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명백한 의지 표명이 없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제자의 고민이 더 필요해보임
- 특히 근로기준법 특례적용폐지 등에서 보이는 현실변화의 방향을 보면 시설 운영자들이 잠재적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음
- 현재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 증가세가 뚜렷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후 방과후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변화를 고려해볼 때 시설설치를 현재 신고제에서 허가제 등으로 전환하고 일단 현재의 종사인력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빨리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봄
- 현장은 그동안 아동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허가제 등의 상황을 강력히 요청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온종일 돌봄 체계를 통해 아동 돌봄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 아동센터는 그동안 해묵은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는데 주력을 두어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저희가 토요일운영을 한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전국적으로 몇 개소 조사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센터 문 앞에서 전화를 해보면 종사자 분이 계신 곳을 답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연구자의 발언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두고 복지부는 1차적으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2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의 격차 등 센터 내부적 요소에 기인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2차적 요인은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예산이나 처우개선 등의 문제에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음. 이는 다만 정당한 요구에 대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요구를 묵살하는 좋지 않은 대응책일 뿐임.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를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호도하여 이를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가 발생하는 은폐된 이유로 내세우는 듯 보일 뿐임

“선생님, 제가 하도 다급하고 화가 나서 의논을 드리려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지역에서 수 년째 센터 몇 개소가 모여서 합창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씩 운영비를 내서 합창제를 하는데, 거기서 평가회를 하며 식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운영비로 밥을 먹었다고 그 밥값을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평가회를 하면서 식사를 했거든요.”

- 현장이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왜’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우리는 절대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분명한 현실인식임
- 그러나 복지부 등의 태도는 이런 처우가 불만스러우면 ‘지역아동센터를 때려치우라’는 메시지로밖에 해석될 수 없음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비교 적용 수당

구분	수당종류	
공무원 적용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120%) 총 6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적용수당	이용시설 (9종)	직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안정지원비, 효도휴가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 복지수당
	거주시설 (10종)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복지수당

서울시 거주시설 종사자의 공무원 대비 급여 수준

A		B	A/B	C	A/C	D	A/D
직위 (평균호봉)	월 급여 (천원)	공무원 직급 (월 급여액)	공무원 대비	공무원 직급 (월 급여액)	공무원 대비	공무원 직급 (월 급여액)	공무원 대비
원장(15)	3,409	5급 (4,700)	72.5	6급 (3,996)	85.3	7급 (3,612)	94.4
사무국장(11)	2,812	6급 (3,658)	76.9	7급 (3,306)	85.1		
생활복지사(9)	2,554	7급 (3,087)	82.7	8급 (2,754)	92.8		
생활지도원(8)	2,314	9급 (2,415)	95.8	-			
기능직(6)	2,020	9급 (2,234)	90.4	10급 (2,072)	97.5		
시설관리인(8)	2,181	10급 (2,235)	97.6	-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꿈꾸며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호봉제 등을 포함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사회복지계 전체의 요구와 동일하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이를 위한 정부의 예산마련을 촉구한다!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총괄하여 결정하는 정부의 단일 부처를 정하고 종사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
3.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등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를 당장 적용하고 그 기준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설정하라!

- 토론문에서 제주의 앞선 노력이 소개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을 독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1단계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중 인건비 및 사무운영비: 직접사업비 = 9 : 1
 - 서울시 : 복지부의 보조금 대응 비율 7 : 3
 - 기타지방정부 : 복지부의 보조금 대응 비율 5 : 5
- 이를 다시 인건비 및 사무운영비 비율 : 직접 사업비 비율로 세분하면
- 서울시 : 복지부의 보조금 대응 비율 (6.3 : 0.7) : (2.7 : 0.3)
 - 기타지방정부 : 복지부의 보조금 대응 비율 (4.5 : 0.5) : (4.5 : 0.5)

지방정부의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대응보조금 전액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예산만을 현행 집행 비율대로 집행하게 함

- 서울시의 경우 인건비 비율: 직접사업비 비율 = 7 + 2.7 : 0.3
- 기타정부의 경우 인건비 비율: 직접사업비 비율 = 5 + 4.5 : 0.5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2단계

- 직접 사업비 부족분 : 서울시 0.7 + 기타 지방정부 0.5
 - 전액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무운영비 월 150만원 내외
- 현재 기재부의 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직접 사업비와 사무운영비 등으로 전환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할 것을 요청하거나 기재부 예산으로는 직접 사업비로 사용하고 복지부가 별도의 사무운영비 마련을 고민해봄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3단계

- 복지부 차원에서 문제해결 시점까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단일 임금 체계 적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독려함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정부를 문제해결의 또 다른 주체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적 동기부여의 역할을 복지부가 할 필요가 있음**

- ▷ **현행 온종일 돌봄 체계 내 지역아동센터 : 기타 돌봄**
취약 계층 돌봄 (낙인우려) : 보편 돌봄 (중상층, 우월 돌봄)
- ▷ **정책 방향의 틀을 보편복지의 틀 안에서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재편**
 -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돌봄→ 1차 돌봄 / 기본 돌봄
 - 여타 지역기관 등의 돌봄 → 2차 돌봄 / 틈새 돌봄
- ▷ **현행 이용아동 입소기준 = 취약계층 아동입소비율 : 일반아동 특례 = 8:2**
현행 8:2 비율은 유지하나 지방정부가 입소기준을 정해 입소를 결정한 아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80% 비율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아동보호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20%는 현행과 같이 입소기준에 미달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시설자체에서 발굴한 경우로 시설의 아동발굴을 지원하는 비율로 남겨둠

□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1. 아동의 보편 돌봄 실현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함
2.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
4. 사회복지계 연대 강화 및 사회복지 발전 촉진
5. (간접) 납세자의 납세부담 의지 개선



토론 IV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와 한 가정의 아빠로, 또 다른 여섯 아이의 아빠이자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의 岐路(기로)

한몸그룹홈 표주현 시설장

저는 2003년에 설립한 대구에 있는 그룹홈에서 근무한지 만7년 10개월 된 사회복지사이다. 지난해까지는 보육사로 올해부터는 시설장으로 대구에서 아동들을 키워내는 사회복지사이자 최근 딸을 출산한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이런 토론회 자리에 나서는 것도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이봉주 교수님이 발제해주신 자료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영광이며, 발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현장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시설 간 종사자 임금의 차이가 “왜 차별인가?”를 아동그룹홈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우선 저는 지난해 9월 전국의 그룹홈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님과 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제가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현장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내가 인권위원회에 사회복지사 차별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

저는 인권위 진정 대상자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광역시장으로 청구하였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설치, 신고 된 그룹홈의 인건비 항목의 보조금 지급 금액 및 방법을 결정하는 중앙행정관청이다. 대구광역시는 그룹홈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휴업, 폐업을 결정하고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두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 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진정을 한 주요 이유는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평등권 침해로 보며,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동그룹홈과 아동 양육시설은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복지법에 의거 종사자의 자격 기준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로써 평가를 받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과 내용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같은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당한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룹홈 보육사의 평등권을 침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

둘째, 아동 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은 아동복지법상 시설의 종류만 다를 뿐 시설의 설치 및 휴업, 폐업, 보호 아동의 입소 및 퇴소, 아동의 인권 및 보호 기간,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 기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의거 시설평가 등은 동일하다. 다만 보호하는 아동의 수와 설치 기준상 시설 면적만 상이할 뿐이다. 그룹홈은 7인 이하, 82.5㎡이라는 것만 제외하고 신고시설인 것도 동일함에도 종사자가 같은 노동을 함에도 차이를 두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대, 방임, 가정해체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민간위탁시설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국가가 제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정이기 때문에 적절한 질과 항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연속적인 생활환경이 장기적 안목에서 보장되어야 하는데, 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안정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이행해야 하며, 헌법 제10조에 의거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하고자 하는 공적 의무를 이행하여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그 지위 및 보수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셋째, 같은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시설이 소규모라 차등을 준다면이라도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생활가정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아동 양육시설은 지방 이양사업(분권)이라서 그룹홈은 중앙정부 사업(비분권)이라서 차이를 둔다 해도 앞서 이봉주 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제주도나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그 역시 명백한 차별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위반하였다. 2003년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2차 권고사항(CRC/C/KOR/CO/2/paras. 40-41)에는 공동생활가정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안 양육시설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2012년 3차 권고사항(CRC/C/KOR/CO/3-4/paras. 47-48)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아동의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나아가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비용의 효율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관리의 편의성에 집행하게 되는 대규모 시설과 달리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낙인화 예방,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을 경험하며 사회적응력 향상, 거주 아동들 간 및 아동과 종사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 형성, 나아가 아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기에 위와 같은 권고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위 권고를 이행하여야 하기에 이유 없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차별 대우하는 것은 그룹홈의 양적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아동 처우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종사자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반하며 권리협약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한 차별행위이다.

2.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현황과 비교

현재 한몸그룹홈은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이 근무하는데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생활시설이기에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전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밤샘 근무하고 매주 화요일 주 1회 휴무를 하는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한몸그룹홈에는 학대로 들어온 6세 아동,

친부 수감 후 입소된 11세, ADHD 치료받고 있는 12세, 친부수감 후 친모에 의한 중3인 15세, 친모 학대로 입소한 다문화 고3 아동까지 총 6명의 아동이 있다. 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업무 이외에도 행정, 후원개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다.

근무시간만 해도 2017년 기준으로 당직의 경우, 12시까지 근무하고 6시간 후 다시 근로한다고 쳐도 한몸 그룹홈 종사자 1은 54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야간근로 2시간으로 총 시간외근로 16시간 발생), 종사자2는 50.5시간으로 (10.5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6시간, 휴일근로 9시간 총 시간외근로 25.5시간 발생), 종사자 3은 51.5시간 (연장근로 11.5시간, 야간근로 6시간, 휴일근로 9시간으로 총 시간외근로 26.5시간 발생) 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12시-6시를 빼더라도 종사자 1은 16시간, 종사자2는 25.5시간, 종사자3은 26.5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게 된다.

2017년 최저임금 기준인 7,5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받아야 하는 최저 임금은 종사자 1은 2,290,375원 / 종사자 2는 2,347,634원 / 종사자 3은 2,396,714원은 최소한은 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2017년에는 1년에 22,554,000원, 2018년에는 24,942,000원이며, 이는 기관 부담 사회 보험료와 퇴직금을 포함하니 실제로 정부 보조금에서 줄 수 있는 것은 2017년에는 월 165만 원, 2018년 월 175만 원 선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상여금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일이다.

그나마 후원금이라도 여유 있게 있다면 모를까 그나마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제한적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 현황〉

(단위 : 원, 년, 호봉)

구분	시설장		보육사	
	2017년 기준	2018년 현 급여	2017년 기준	현 급여
평균 근무기간	6.5년	24,942,000/년/인 사회보험료, 퇴직금포함 실 월 급여 평균1,680,000	2.7년	직급구분 없이 상동
평균 호봉	8.9호봉		3.6호봉	

2017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그룹홈 시설장은 6.5년, 보육사들은 2.7년 평균 재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헌법 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헌법인 정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가? 국가는 그 ‘적정임금’을 우리에게 지급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다.

‘적정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 수준을 말한다. 국가는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수준의 것이 되도록 입법 조치를 강구하거나 그 밖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하기에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하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 7년 일한 이제 갓 태어난 딸을 둔 가장으로 내가 받는 급여로 과연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고, 이 딸에게 적절한 교육과 안정적인 주거,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인상률이 매년 되었고 지난해 온 그룹홈들이 힘을 모아 농성하고 단식하고 국회와 총리실의 도움으로 증액된 것을 ‘기적’이라고 할 정도니 언제쯤 그룹홈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전체 사회복지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내가 그룹홈에서 아동들이 성장하는 것이 옳다고 믿음에도 가장으로써 이직을 해야 하는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

3. 만약 내가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면?

만약 내가 그룹홈이 아닌 양육시설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시설장이니 만 7년 10개월 된 내가 2018년에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급여는 42,820,800원이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정보보조금은 딱 50% 수준이다.

직위	호봉	월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 총액
양육시설 시설장 (원장)	2018년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가이드라인 원장 기준 8호봉	3,244,000원×12월 =38,928,000원	3,892,800원 기본급 120%	지급 대상 미 산출	지급제외	42,820,800
아동 그룹홈 시설장	1인 24,942,000원 (퇴직금 사회보험료 포함)	1,750,000원×12월 =21,000,000 (보조금에서 기관부담사회보험료, 퇴직금 지급함)	지급제외	지급 제외	지급제외	21,000,000
양육시설 보육사 (생활 지도원)	2018년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가이드라인 생활지도원 3호봉	1,826,200원×12월 =21,914,400원	2,191,440원 기본급 120%	지급 대상 미 산출	지급대상 10시간기준 131,066원 ×12월 =1,572,792원	25,678,632
아동 그룹홈 보육사	1인 24,942,000원 (퇴직금 사회보험료 포함)	1,750,000원×12월 =21,000,000 (보조금에서 기관부담사회보험료, 퇴직금 지급함)	지급제외	지급 제외	지급제외	21,000,000

올 한해만 비교 해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7년 동안의 격차를 계산해보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물론, 양육시설의 종사자들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지방 이양되다보니 2018년에도 2016년 거를 적용받는 곳도 있고, 서울과 지방간 임금 격차도 심각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어떤 지역은 10시간, 어떤 곳은 20시간을 받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없어 그보다 낮은 시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곳도 있기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서울시나 제주시처럼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가 도입되어 급여지급 기준과 지원 체계를 흔들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43억이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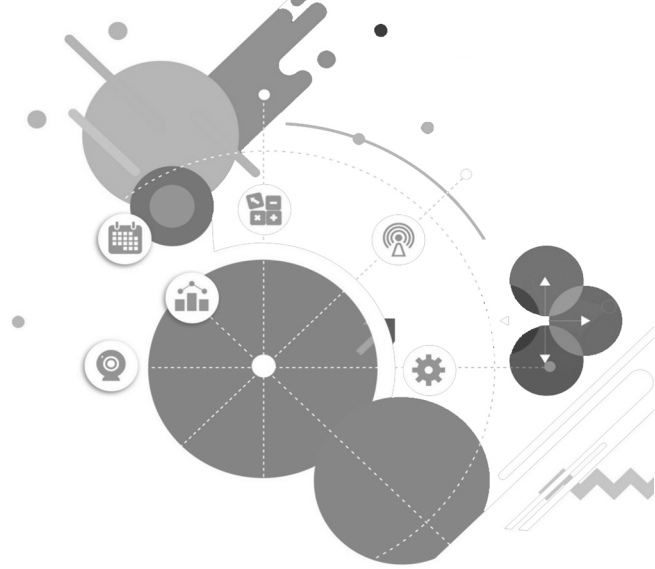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우선 아동그룹홈만 기본적인 적용할 때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보면, 43억이면 가능하다. 물론 한 번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만 알고 있기에 적어도 보건복지부가 실현을 위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그 의지를 2019년 예산에 반영해주어야 할 것이다.

구분	2018년 정부안	2019년 필요한 예산안
	(1,398명지원) 13,417백만 원	(1,416명지원) 17,738백만 원 (▲4,321)
인 건 비	시설장 $24,942\text{천원} \times 448\text{명} \times 40\%$ = 4,469백만 원 보육사 $24,942\text{천원} \times 844\text{명} \times 40\%$ = 8,420백만 원 신규종사자 (6개월 추가배치) $12,471\text{천원} \times 106\text{명} \times 40\%$ = 528백만 원	시설장(원장8호봉 기본급만 기준) $42,820\text{천원} \times 466\text{명} \times 40\% = 7,981\text{백만 원}$ 보육사(생활지도원3호봉 기본급만 기준) $25,678\text{천원} \times 950\text{명} \times 40\% = 9,757\text{백만 원}$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유엔의 권고와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탈시설화 정책 등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질적 양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은 종사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없애도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그룹홈은 아동과 종사자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가능하며, 아동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과 개별적 성향이 능동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 보호대상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보다 아동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기 때문에 아동보호 체계의 최선을 아니어도 현재 우리나라 최적의 보호 방안이다.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의 노력도 필요하고, 정부의 노력도 이 자리를 열어준 국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현장-정부-국회가 서로 협력하여 그 노력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 여기며 꿈꿔본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부록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활동상황

18.06.18.(월) 기준

연대 개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이하 아동연대)는,

- 아동복지 관련 사회복지사가 겪는 열악한 처우가 이직률 상승 및 구인난 등으로 이어져 전문성이 추락하고 결국 시설 이용(거주)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고리를 개선하고자 결성한 단체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4개 단체 주도

처우개선 미래방향(안, 공동 목표)

- ▲ 공적 책임성이 높은 형태의 아동복지 일자리 창출
- ▲ '차별 없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통 적용' 및 관련 예산 확보(지역아동센터는 사업비-인건비 분리 교부/ 그룹홈은 기금예산을 본예산으로 전환)로 국가자격자의 아동 복지 전문성 향상
- ▲ 보다 표준(특성)화된 서비스 도입 등 궁극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질 개선

주요보도

[중앙일보 `18.05.04.(금) 16면]

해체가정 아이, 자식처럼 돌보는데 ... 복지사들 '열정페이'

〈기사 주요내용 발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5년 전 한국에 그룹홈과 가정위탁을 확장하고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선진국에 없는 대형 아동양육시설을 줄이고 가정형 양육을 늘리라고 권고한 것이다. **오승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대표(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는 “일본도 5년여 전부터 대형 양육시설을 소규모 그룹홈으로 쪼개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그룹홈은 전국에 550개(아동 2800명) 있다.

그룹홈 복지사는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62%, 지역아동센터는 69%에 불과하다. **오승환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담았는데,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버려진 자식처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18.05.15.(화) 1면] 가정해체 아동 보호 '그룹홈' 정부지원 사각지대

[서울신문 `18.05.19.(토) 11면]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아이들 또 상처받지 않게...
'그룹홈' 국가가 책임을”

결성

○ `18.03.22.(목) 14: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실

-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예산 TF 회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을 상임대표로 하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4개 단체가 '인건비 예산' 관련 목표를 상시 공유하는 대책기구를 창설키로 합의. 실무단 별도 구성

연대단체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한국 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한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대표단	(상임대표) 전병노 이사장	(공동대표) 안정선 회장	(공동대표) 옥경원 대표	(공동대표) 오승환 회장

대표단 변경에 따른 조직원 변화

○ `18.04.02.(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 건강악화로 사임

- 6월 새 이사장 선출 전까지 성태숙 이사(서울지부장)가 정책분야 업무대행, 우리 연대체에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합류

연대단체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한국 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한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대표단	(상임대표) 성태숙 정책이사	(공동대표) 안정선 회장	(공동대표) 옥경원 대표	(공동대표) 오승환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사 인건비 인상 단계별 추진 언급

○ '18.04.05.(목) 17:00 ~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대회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토크콘서트’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 공보

정책브리핑 박능후 장관, 전국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 오승환 회장-박능후 장관 토크콘서트 실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 생중계

*홍보위원회, **대변인실

〈박능후복지 언급 사항〉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크게 나누면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근무 여건 중 근로시간이 개선되어야 한다.

- 먼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2022년까지, 빠르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까지 100% 이상 도달하도록 하고자 한다. 국고 지원을 받는 시설은 2020년까지,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2022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올라가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축사 때 언급되었던 최저임금 인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힘을 이용해서 복지 분야의 각 시설이나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있고 각 부분별로 여러 가지 조각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등 몇몇 기관을 중점적으로 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약 10% 정도 인상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지역아동센터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복지 분야가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분들은 본인이 쉬고 싶을 때 쉬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체인력으로 인해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대체인력을 대폭 증대해 근무시간 52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계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을 때, 꾸준히 자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분들의 고충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좀 더 멋있고 괜찮은 직장과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주력해 가겠다. 단기간에는 조금 어렵고 한 5년 정도 걸리게 될 거 같다. **반드시 5년 이내에 단계별로 완성시켜 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책하고 비판해 주시고, 잘 하고 있을 때는 좋은 칭찬을 보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힘과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고 칭찬해 줄 때 정치권도 덩달아 잘 해나갈 수 있다. 지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처우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범 기자회견

○ `18.04.09.(월) 14:0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4개 단체가 함께 출범

※ 〈서울복지시민연대〉(대표 신용규), 출범 기자회견에 동참

- 관련보도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출범

[전문지] 복지타임즈/복지저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발족
윌페어뉴스/복지TV “정책 마련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하라!”

[통신사] 뉴시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출범 기자회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아동복지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 1만 지역아동센터아동그룹홈 종사자를 대표하여,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들은 아동의 인권과 권익을 지켜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당하고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연대의 출범을 선언하는 바이다.

본 연대는 특정 개인 및 단체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으며, 복지국가를 위해 차별을 철폐하고 일관성 있는 국정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결성된 연대임을 밝힌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발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은 2000년대 전후 IMF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급속도로 무너지고 해체된 가정들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아동의 사회적 돌봄과 보호'를 법제화라는 이름으로 위임 받았다.

이후 만 14년을 넘어오며, 사회복지시설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시설기준과 평가 시스템, 종사자의 전문자격과 경력기준 도입에 대해, 우리는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즉,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정부를 믿고 따라 왔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모든 조건을 요구하고 강제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에 대한 보장만큼은 배타적이며 봉사와 헌신만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냉담했고, 정책과 예산지원은 매우 소극적이고 차별적이었다.

수년간 아동복지 현장이 요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고 배제된 상황으로, 10년이 넘는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신입 사회복지사 5급 1호봉의 급여에도 못 미치는 열악하고, 차별적인 상황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처해 있다.

정부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끝없는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정부에 동조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며,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아동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지켜내기 위해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을 해왔다는 점을 정부는 기억해야할 것이다.

이제는 14년 동안의 긴 인내와 기다림의 끝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더 이상 정부의 희망 고문에 저울질당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아 동일한 사회복지사로서 존중받고 대한민국 아동복지의 초석이 되고자 한다.

본 연대는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의 개선을 목표로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목소리 높여 행동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해 나갈 것임을 정부와 국회에 밝히는 바이다.

하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일임금체계를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에 도입하라!

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라!

셋, 국회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협조하라!

우리는 오늘 '아동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의 출범'을 선포하며,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에 대한 차별적인 정부의 태도에 반성과 책임감 있는 실천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일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2018년 4월 9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일동

연대단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천막농성 시작 (4/9 ~ 6/1)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천막 설치. 농성 시작

※ 4월 20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정부서울청사 앞 침묵시위 뒤
〈청와대〉 들머리까지 행진

*연대단위별 농성장 지지방문 및
시위 합류



- 관련보도

[전문지] 복지타임즈/복지저널 “아동그룹홈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베이비뉴스 “아동복지, 복권 사서 해야 하나” 천막농성에 복지부 답은?

[통신사] 연합뉴스 ‘우리의 목소리’

뉴시스 아동 그룹홈 정상화 하라

복지부 소관 국장면담

○ `18.04.27.(금) 14:00 세종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옆 회의실



※ 아동연대 대표단, 이강호 인구아동정책
국장(소관2개과* 담당 국장) 면담

*소관2개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참석단체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한국 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한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참석 대표단	(상임대표) 성태숙 정책이사	(공동대표) 최경화 부회장	(공동대표) 옥경원 대표	(공동대표) 오승환 회장

○ 면담배경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가 다름.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역시 **임금 차별**을 받고 있고, 결국 아동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서 전문역량을 소화할 때 박탈감이 큰 상태임. 아동복지분야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기근로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요구사항

- **사회복지분야별 차등 지급되는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해

▲ 아동복지 분야 ‘가이드라인’ 등 계획 제시, ▲‘가이드라인 단일화’ 민·관 상설 논의 테이블 고려(부처 초월 ‘단일임금체계 도입 민·관 TF’ 구성)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4/5(목) 17시 제주,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대회) : “국고 지원을 받는 시설은 2020년까지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2022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올라가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대단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단식농성 시작 (5/1 ~ 5/31)

○ `18.05.01.(화)부터 서울 세종로공원 (정부서울청사앞)



※ 어린이 주간에 ‘아동복지 정상화 및 사회복지사 차별철폐’ 주장하며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 단식

*안정선 회장 5월 7일(월) 건강 악화로 입원, 단식 중단. 이후 입원단이 릴레이 1일 단식

- 관련보도

[전문지] 복지타임즈/복지저널 아동그룹홈협의회, 천막농성 이어 단식농성 돌입
베이비뉴스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어린이 주간 선포식에, 어린이를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단식을 선언하며

5월 2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안정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문재인대통령님, 30년간 어린이를 돌보는 일만 천직으로 살아온 그룹홈 사회복지사로서 단식으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위공무원들의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룹홈 사회복지사라서 생계비만 주면 됩니까?

“그룹홈은 최저임금 157만원을 훨씬 상회합니다. 복지부하고도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간 이익 없는 사안입니다”

- 2017년 예산국회.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김경희

우리는 그룹홈 사회복지사이니 그저 생계비만 넘으면 적정하니까?

“아동그룹홈 종사자 급여는 적정하다”

- 2017년 예산국회. 기재부 고형권 1차관 발언

합의되었고, 이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그저 죽지 않게 생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하루 24시간, 주 7일, 휴일과 명절도 없이 아이들과 살고 있지만,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공무원 중 급여가 가장 적은 공중보건의 1년 차 보다는 급여가 적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기념행사나 돈 쳐들이는 행정입니까.

어린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은 ‘좋은 어른’입니다. 아무리 돈을 쳐발라도 그 가운데 좋은 어른이 없으면 아동들은 도리어 불행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열악한 환경이라도 좋은 어른이 그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은 도리어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홈은 대규모 양육을 탈피하여 가정형으로 아동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와 상담, 치료사들이 7명 이하의 상치 받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곳입니다.

2004년 법제화 이후부터 국가에서는 그룹홈의 사회복지사들을 시설종사자로 관리하며 공무원과 같은 차별규정을 두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할 때는 “시설”이라고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지원은 같은 아동복지시설인 대규모 양육시설과 차별하여 그룹홈은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15년간 기재부사무관이 호봉도, 직급도 없이 매 해 마다 임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었고, 매일 같은 또래의 어린 아이들과 30년을 넘게 살다보니 보람도, 사랑도 있지만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조금 더 살다가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룹홈의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동을 사랑하는 젊은이더라도, 비전도 희망도 없는 그룹홈에서 일하라고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보호정책은 “탈시설화”로 간다고 하고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아동은 점차 늘어나지만, 종사자가 늙고 소진되어 가니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그룹홈은 없어지고 다시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룹홈에서만 살아온 사회복지사인 저는 마지막 봉사의 심정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개돼지인가요. 힘없고 뺨 없는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3주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온갖 호소와 애걸을 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자기를 잡아먹어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

부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가장 좋은 아동보호체계인 아동그룹홈을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

아동그룹홈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차별을 즉각 철폐하라!!

아동연대 대표단 회의, 여성연대와의 조우

○ `18.05.03.(수) 13:00 서울 세종로공원(정부서울청사앞)

- 천막농성장에서 아동연대 대표단 회의 진행 직전 여성연대 대표단과 조우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아동연대 및 여성연대와 모두 함께 하고 있음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정책이사가
여성연대* 대표단과 우연히 만나 인사

*전국여성폭력방지전문상담원처우개선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국장 공석) 소관
5개 과장(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
기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면담 진행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브리핑

○ `18.05.09.(수) 15:00 정부서울청사

- ‘정부 출범 1년’ 브리핑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하겠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종사자 임금수준 개선

*보수·근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우개선 정책 수립 토대 마련

- 공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부 출범 1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국가 기반 마련

〈박능후복지 언급 사항〉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 마련(18.2)* 및 (가칭)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8.하)

* 사회서비스 포럼 구성·운영(18.3~, 전문가 등 60여명)하여 의견수렴

- 사회서비스진흥원 사업타당성 및 운영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 사업 추진(18.하) 및 시·도 사회서비스진흥원 본격 확충(19)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종사자 임금수준 개선 및 보수근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우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마련

* (국고시설) 아동그룹홈 10.6%, 지역아동센터 9.1% 노숙인 시설 5.6% 등 인상

** (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10,760원(16.5% 증), 노인돌봄종합 10,760원(9.8% 증)

연대단위 신임 대표 선출에 따른 조직원 변화

○ `18.05.14.(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이사장 선출

- 4월 2일 전병노 이사장 사임(건강 악화) 뒤, 40여일 만에 새로 선출한 남세도 이사장이 우리 연대체에 합류

참석단체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한국 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한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참석 대표단	(상임대표) 남세도 이사장	(공동대표) 최경화 부회장	(공동대표) 옥경원 대표	(공동대표) 오승환 회장

(연기) 아동복지영역 사회복지사 전진대회(규모: 2,000명)

○ ~~18.06.19.(화)~~ 14:00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앞→보건복지부앞 경유 행진→기획재정부앞 정리 집회

- 연기 사유 : 여러 경로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의지 확인,
7.10. 토론회 뒤 재논의 예정

(예정) 아동복지영역 사회복지사 토론회(규모: 500명)

○ `18.07.10.(화) 14: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김순례(자유한국당)
- 주제발표: 이봉주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끝.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8년 7월 10일

발행처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www.grouphome.kr

서울시 중구 을지로18길5, 6층 | 02-364-1611,1617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www.kaccc.org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95 선일빌딩 3층 | 02-732-7979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www.hjy.kr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10, 202호 | 1544-4196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4층 | 02-786-0847